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제2013-202호  
예고기간 : 2013. 11. 8 ~ 28  
담당부서 : 계약제도과(044-215-5214)  
전문참고 : 기획재정부(www.mosf.go.kr)

## ㉠ 개정이유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2028호, 2013.8.13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가치 종합심사낙찰제의 시범사업을 공기업 등에서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2014.1.1.부터 공사금액 30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예정인 최저가 낙찰제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토록 하는 등임

## ㉡ 주요내용

### 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범위(시행령 안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를 「조세범처벌법」제3조, 「관세법」제270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를 위반하여 포탈·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의2를 위반하거나 「외국환거래법」제29조제1항제6호(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 위반한 자로 신설함

### 나. 공사의 분할·분리발주 관련규정 명확화(시행령 안 제68조)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서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하여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 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를 추가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할·분리발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토록 함

### 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시기 유예[시행령 안 부칙(제22282호) 제1조]

'14.1.1일부터 확대 시행(공사금액 300억 원 → 100억 원 이상) 예정인 최저가낙찰제를 '16.1.1일부터 확대 시행토록 2년간 유예

### 라. 수의계약 대상 및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대상 개정[시행령 안 제26조, 제30조, 부칙(제22282호) 제7조]

수요처의 필요에 의해 공개경쟁을 거쳐 공동으로 기술 개발한 제품(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 범위 설정 기준 및 단계적 감축 기준을 개정

마. 계속비 공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 개정(시행령 안 제60조)

계속비 공사에서 부분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부분 완공된 시기부터 기산토록 개정

바. 기술제안 입찰 심의시기 개정(시행령 안 제99조)

부실설계를 차단하고 기술제안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여부 심의시기를 설계 전에서 설계완료 후로 개정

사.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규정 개정(시행령 안 제51조)

단가계약에서 일부 계약을 미이행할 경우 계약보증금 중 이미 납품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하고 국고귀속 할 수 있도록 개정

아. 기타 문구 개정(시행령 안 제7조의2, 43조, 111조)

방위사업법 등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안내



대통령령 : 제2013-24864호

공포일자 : 2013. 11. 20

담당부서 : 소방산업과(02-2100-5387)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www.nema.go.kr](http://www.nema.go.kr))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가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행정처분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782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하자보수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그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공사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기준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력기술관리법령 유권해석(산업통상자원부) 사례

## 1 주상복합건물의 연면적 산정방법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모집공고된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외 건축물(업무시설 + 판매시설)}에 대하여 공동주택 PQ(전기) 평가시 실적인정을 받고자 하는데,
  1.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 연면적 합산 실적인정여부
  2. 공동주택 연면적(100%), 비주거시설(80%)인정 여부
- 만약 2번으로 실적인정을 받을 시에는 실적신고 할 때 구분신고, 실적계산시도 같은 건으로 구분지어 실적계산을 해야 되는지

(인터넷 민원질의 2010. 1. 11)

## 2 PQ평가시 비상주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문의로,
  - 입찰공고일 : '10년 01월 01일
  - 감리용역기간 : '10년 04월 01일 ~ '11년 12월 31일
  - 업무중첩 현장배치기간
    - A현장 : '09년 01월 01일 ~ '10년 02월 31일
    - B현장 : '10년 03월 01일 ~ '11년 12월 31일
-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에 해당되는 현장은 어느 현장인지,
  -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을 확인할 때에는 입찰 공고일 기준인지, 현장의 중복기간인지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모집공고된 주상복합건축물의 참여분야는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로 구분하지 않고 주거시설로 분류하고 연면적 산정도 합산합니다.

- PQ고시 별표 3 중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는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적,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중복현장 개소에 따라 차등 평가하고 있으며,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된 경우 중복배치가 됩니다.
- 업무중첩도 등의 평가에 있어 기간의 산정은 PQ고시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의의 2개 현장은 당해 감리용역기간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 다만, A현장의 경우에는 당해 감리용역기간과 중복되지 않음을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중복배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3. 19)



# 전기사업법 유권해석(산업통상자원부) 사례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현재 저희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양계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 1가구당 50~74kW 전기를 한국전력으로 부터 수용신청 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년중 어쩌다 갑작스런 정전 사고로 인해 30분~1시간정도 정전되면 양계는 폐사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어쩔수없이 70~150kW의 비상용으로 발전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에서 발전기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별도 선임하여야 하는지요?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1278(2013. 9.30)

-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저압 75kW(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20kW이상) 이상 전기설비이거나 용량 20kW 이상의 발전설비입니다.
- 귀 농가에서 사용하는 50~70kW의 전기수용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나 20kW 이상인 발전설비가 있는 경우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됩니다.  
\* 발전설비를 폐지(철거)하는 경우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됨
-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입니다. 이때 전기설비용량을 합산(수용설비+비상용예비발전설비)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2. 10. 30)

##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1항”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저희 회사가 이번에 290kW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여 전기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관리자의 선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or 아닌지 궁금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1278(2013. 9.30)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전기사업용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290kW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리으며, 아래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1조1호다목에 따라 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에게 전기안전관리 대행가능  
- 시행규칙 제42조1호다목에 따라 전기분야 안전관리자를 전기분야기능사 이상 또는 고등학교 전기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선임가능

(인터넷 민원질의 2012. 2. 28)